

## 2020년도 제1회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발언자	발언내용
위원장	2020년도 제1회 계약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지난 2019년도 제10회 계약심의위원회 진행사항에 대하여 구매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간사(구매팀장)	<b>&lt;&lt;심의결과 요약 보고&gt;&gt;</b>
위원장	전차 회의결과에 대해서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었는데 위원님들 발의 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계약심의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는지 보고해주십시오.
간사(구매팀장)	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6조에 의거, 재적 위원 8명 중 7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제주공동물류센터 위탁운영』 계약방법 등 심의 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부서 물류관리팀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제안부서장 (물류관리팀장)	<b>&lt;&lt; 제2020-01호 부의안건 설명 &gt;&gt;</b>
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 위원	두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제안요청서 7페이지에 보시면 ‘도내·외 물류창고 필수 면적’ 이상 보유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5페이지 중간에 창고사용료 부분과 그 다음 상하차료 부분을 보시면 이용기업 제품을 ‘공동물류 운영사’, ‘도내·외 창고’에 보관하는 비용으로 되어있고, 밑에 상·하차료 부분에서는 그냥 ‘물류센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어를 전체적으로 통일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내·외 창고’와 ‘센터’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있어서 통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자	발언내용
<p>◎ ◎ ◎ 위 원</p>	<p>그 다음은 회의자료 31페이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보시면 도에서 상·하차료와 보관료에 대한 정해진 금액을 이 168개 업체에 지원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업체부담인거구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행하는 입장에서 어차피 도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68개 업체와 이 물류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보면 제안가격점수는 20점으로 되어있지만 물류비 절감을 위한 혁신방안이 5점으로 되어있거든요. 이 점수를 10점 정도로 올리고, 도내물류 활성화 방안제시 배점을 10점에서 5점으로 낮추면 되지 않겠나하는 의견입니다. 이유는 ‘도내물류 활성화 방안제시’에서 구체적으로 금액이라거나 특별하게 혜택이 나올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럼 차라리 앞서 말씀드린 168개 업체에서 금전적인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배점을 주는 것이 어떨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p>
<p>제 안 부 서 장</p>	<p>우선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어 통일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도내·외 창고’와 아래에 있는 ‘물류센터’는 동일한 내용인데 저희가 용어 통일을 못한 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수정을 하겠습니다.</p> <p>배점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총 139,400만원 예상사업비 중에 운송비와 창고보관료가 같이 포함되어있는 부분인데, 보관료에 한해 투찰가격으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운송료는 도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가격투찰을 통해서 정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대로 그 외 추가적으로 실제 이용기업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조금 전 말씀하신 ‘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혁신 방안’ 정성평가 부분 배점 5점을 배정을 하였습니다.</p> <p>지난 번 입찰과 이번 입찰의 다른 부분은 예상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총 13억원 이상이어서 지역제한을 둘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물류의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평가항목에 삽입을 했고요. 그래서 배점 조정 과정에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아까 말씀해주셨던 내용도 중요하지만 도내업체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내물류 활성화 방안 부분에 10점을 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p>

발언자	발언내용
◆ ◆ ◆ 위 원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취지가 제주지역 물류 활성화와 이 부분 관련해서 방안을 제시해서 최고점 10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에서 제주도내 지역업체의 경우에 10점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건가요?
제 안 부 서 장	실제 평가내용을 보시면 그 업체가 도내업체인지 도외업체인지에 따라서 평가점수가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도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 만약에 도외업체가 최종 선정이 되더라도 도내 물류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용기업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 ◆ 위 원	이 부분을 10점으로 배점을 하게 된 것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안이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정도로 현실화 가능성이 제시되는 방안일 것인지 의문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5점으로 되어있는 ‘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혁신 방안’ 부분이 물류비 단가를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바로 수치가 나올 수가 있으니 이 부분에 배점이 더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따르더라도 ‘제주지역 물류 활성화 방안제시’라고 하면 이상적인 제안에 대해서 10점을 주게 되고, 현실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거의 안하거나 아니면 가능성 있는 방안만 아주 소수로 제시한 업체가 어떻게 보면 더 진실된 업체일 수 있는데 그 업체가 사실 낮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성평가이긴 하지만 제량이 너무 많이 발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5점, 10점 배점을 조정하자고 하셨는데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조정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 원 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해서 후에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KPI를 설정하게 됩니다. 계약이 되면, 계약을 가지고 KPI를 설정해서 매년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평가 가능한 부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고요. 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혁신 방안에 대해서 물류비 절감을 위해 하청업체에 부담에 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삼다수 판매 물류의 경우 도내 하청업체에 적정대가가 돌아가도록 하면 점수를 더 주는 방식을 채택을 했었거든요. 물류비 절감보다도 적정단가를 책정하는 쪽에 점수를 더 주는 방식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발언자	발언내용
◆ ◆ ◆ 위 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네요.
◎ ◎ ◎ 위 원	상대적이기는 한데 여기 168개 업체가 이 업에 참여해서 이 혜택을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168개 업체도 혜택을 봐야하겠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도내 물류업체 일부분도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의 시작 자체는 이 168개 업체를 위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물류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 도내 운송업체에 대한 혜택부분은 아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 ㉠ ㉠ 위 원	이 사업이 몇 년째 이어지는 거죠?
제 안 부 서 장	도의 공동물류사업은 2011년도부터 진행이 되어왔던 사업이고요. 최초에는 ■■■■■가 대행을 했었습니다. 2017년 2월까지 ■■■■■가 했었고, 중간에 ■■■■■와 대행협약이 잘 안되면서 저희한테 대행 사업이 넘어오게 됐고 2017년부터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 원 장	참고로 8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저희한테 넘어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물량이 연간 2,000PLT 정도 연간 운영이 되다가 작년에는 16,599PLT로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이 사업을 맡은 이후로 참여업체도 많이 늘었고, 이용물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서 현재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성장을 해가는 상황입니다.
㉠ ㉠ ㉠ 위 원	사업이행실적 3년간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제한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내부검토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 건도 계약기간이 2년이 넘지 않습니까?
제 안 부 서 장	네 32개월입니다.
㉠ ㉠ ㉠ 위 원	그러면 이게 순환적인 개념으로 보면 3년간이라는 부분이 과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 원 장	신규업체 진입장벽 측면에서요.

발언자	발언내용
<p>○ ○ ○ 위 원</p> <p>제 안 부 서 장</p>	<p>네 그런 면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공사의 경우에서도 5년, 10년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번 다시 들여다 봐야할 것 같거든요.</p> <p>실적인정기간을 조금 늘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p>
<p>○ ○ ○ 위 원</p> <p>구 매 팀 장</p>	<p>네. 3년이라고 하면 너무 좀 참여하는 업체 범위가 너무 제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p> <p>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기준이 따로 지방계약법에 없어서 저희가 조달청 기준을 준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달청 기준에서 최근 3년간, 창업기업의 경우 7년까지 인정하고 있어서 그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p>
<p>○ ○ ○ 위 원</p> <p>제 안 부 서 장</p>	<p>그러면 할 수 없고, 이걸 어떻게 하죠? 자료상에 공동이행방식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던데요. 그러면 차량 관련, 창고 관련 소유개념을 사업자가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p> <p>예, 맞습니다. 창고는 임대도 가능하지만 일단 창고업 등록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p>
<p>○ ○ ○ 위 원</p> <p>제 안 부 서 장</p>	<p>평가항목에도 지역물류 활성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열어두는 것도 지역경제적인 차원에서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p> <p>일단 급격하게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약 16,000PLT 정도, 그리고 지금은 32개월로 늘어나다 보니까 총 44,000PLT 정도로 물동량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면 공동도급으로 해서 몇 개 업체가 나눠서 운영한다고 봤을 때는 물량이 많지도 않다고 볼 수 있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공동도급은 안하는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도청, 이용기업 협의회와 지속적인 관계형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개 업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낫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공동도급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p>

발언자	발언내용
○ ○ ○ 위 원	금액이 5억 미만이라서 이전 입찰에서는 지역제한으로 했다고 했었죠? 그때 참여했던 업체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일은 없을까요?
위 원 장	지역제한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요?
○ ○ ○ 위 원	지역제한으로 들어와서 이 사업을 수행했던 업체도 있다고 하면 그런 지역 업체들이 전국입찰을 했을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위 원 장	지역업체끼리 컨소시엄도 되지만 육지업체와 지역업체가 컨소시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수는 있겠죠. 다만 이 정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도내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 년에 5억이고, 창고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거든요.
◆ ◆ ◆ 위 원	제주지역물류활성화 기준은 예전에 없었던 것이 추가된 것인가요 아니면 배점이 조정된 건가요?
제 안 부 서 장	추가됐습니다.
◆ ◆ ◆ 위 원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대신에 제주지역 물류활성화 방안을 제시를 하면 10점을 주겠다고 하면 이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반영이 된 것으로 이해가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 ● 위 원	도외업체와 도내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를 갖추어서 할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과한다는 제도를 두면 지금 지역기업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 원 장	도외업체와 도내업체 공동 컨소시엄에 가점을 주면 도외 대기업이 주계약자가 될 가능성이 큰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5억 사업을 가지고 도외 대기업이 주계약자가 되고 도내업체가 같이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하청과 같은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언자	발언내용
○ ○ ○ 위 원	염려스러운 것은 도내업체가 참여를 못하는 경우 민원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업체도 단독으로 충분히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그런 업체가 상당수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제 안 부 서 장	도 홈페이지 기준으로 보면 전부다 도내업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도내에 참고를 두고 있고 물류창고업 등록된 업체가 총 20개 업체 정도 됩니다.
위 원 장	근래에 들어서 도내 운송업체들의 운영체계도 상당히 선진화 되었고, 경쟁력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 ■ ■ 위 원	의안명이 ‘제주공동물류센터 위탁운영 계약’이라고 되어있는데 고민해보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운영 계약’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법률적 시각에서 보면 정확한 표현은 ‘제주공동물류센터 물류운영 위탁 계약’입니다. ‘위탁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용어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법률적 용어로는 ‘물류운영 위탁 계약’이 더 적절합니다.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위임계약’인데 위임 계약을 보통 위탁이라는 말로 많이 쓰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데 ‘물류운영 위탁 계약’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위 원 장	물류센터 수탁운영에 따른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 ■ ■ 위 원	‘위탁운영계약’이라는 말은 없으니까요. 7쪽에 보면 오타인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주요내용에서 첫 번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2개월로 되어있는데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2개월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 원 장	용역계약이긴 한데, 정확하게 ‘계약기간은 착수일로 32개월’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 ■ 위 원	그 위에도 계약기간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용역이라고 하면 계약내용이 정신적 창작물 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계약기간이라고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발언자	발언내용
위원장	위원회를 할 때마다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 용어의 일관성이라든지 통일성 그리고 정확성 내지는 적합성 등이 매번 지적이 됩니다. 매번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전에 비해서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발주부서는 물론이고 계약부서에서도 보다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 ■ 위원	입찰공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마련된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해서 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입찰공고 작성에 대해서는 이른바 첨예하게 유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이야기 되었지만 평가배점을 적절하게 설정했는가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좋은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배점을 주는 것에 대해 평가표를 만들 때 나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도내업체를 어떻게 보호하고 적절한 가격으로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입찰가격에 대해서도 저희가 20점만 배점을 한 것에는 가급적 적절한 가격으로 업체가 선정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물류업체 활성화라든지 그 위에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정한 데에서도 이전에 했던 내용이라든지 이전에 하면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들도 고려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적에 도내운송업체 내지는 이용기업에서도 의견을 사전적에 들었습니다. 위탁을 저희에게 주는 도청의 의견도 듣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평가항목이라든지 배점을 정했습니다.
■ ■ ■ 위원	사실상 이번이 두 번째 입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3년 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배점 기준 상 어떠한 개선할 내용은 없는지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이 가장 그를 토대로 한 배점기준이 최적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배점기준으로 했을 때 종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부족한 부분들은 무엇이었는지 이걸 고려해가지고요.
위원장	이전에 평가항목 배점기준하고 달라진 게 혹시 설명이 가능한가요?

발언자	발언내용
제 안 부 서 장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변경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혁신방안’이 지금 5점으로 배점이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난번 입찰 때에는 ‘합리적인 통합물류비 단가제시’로 해서 아예 가격평가 쪽으로 치중해서 배점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15점으로 배점이 되어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지역제한이 없어지는 부분을 반영을 해서 ‘물류비 절감 혁신방안’을 5점으로 수정을 했고, 도내지역 물류 활성화 10점을 신설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량평가 부분에는 저희가 사회적 책임 부분에서 6점을 추가로 배정을 했습니다. 원래 신인도 2점, 차량보유 6점, 경영상태 6점으로 되어있던 부분에서 차량보유와 경영상태를 2점씩 감해서 사회적 책임 6점을 추가로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입찰하고 이번 입찰에 배점 부분이 변동된 부분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 ■ 위 원	그런 바탕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위 원 들	네.
◆ ◆ ◆ 위 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안의결을 하되, 최종적으로 공고가 나가고 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용어라든지 문맥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공고를 나갈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 ◆ 위 원	위원장님, 종결을 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여러 번 지적했던 것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60페이지 13조에 분쟁의결 부분인데요, 지금 이 문장 자체로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면 ‘협약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중재법」에 따른 중재)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해결한다.’라고 했네요. 가운데 중재안을 보면 중재 뿐 만 아니라 ‘조정 「중재법」에 따른 중재’라고 되어있어서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제안을 했을 때에는, 세 번째 줄에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로 되어있는데 ‘중재(’를 빼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해결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발언자	발언내용
◆ ◆ ◆ 위 원	그때도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서 표현이 이상하다고 수정하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장을 보면 ‘중재 또는 소송절차에 따라 해결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괄호 안을 보면 중재 또는 소송절차가 아니라 조정도 있고 중재법에 다른 중재도 있습니다. 그 다음 ‘위원회의 조정’하고 ‘중재법에 따른 중재’ 사이에 점을 하나 찍거나 ‘또는’이라는 말을 써야 문장이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 조문이 오해할 수 있는 문장이 됐습니다.
■ ■ ■ 위 원	위원회의 조정하고 중재법에 따른 중재는 다른 방법이어서 이것을 연결을 해서 적어놓으니, 위원회의 조정이 마치 중재법에 따른 중재인 것처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인거죠.
◆ ◆ ◆ 위 원	네.
■ ■ ■ 위 원	괄호 전에 ‘중재’를 빼면서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할 수도 있겠네요.
◆ ◆ ◆ 위 원	‘또는’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면 가운데 중간점을 찍으면 됩니다.
■ ■ ■ 위 원	‘조정 및 중재법에 따른 중재 또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 ◆ 위 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가운데 점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위 원 장	‘또는’이 여러 번 들어가서 그러면 ‘조정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해결한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 ◆ 위 원	네.
구 매 팀 장	전에 결과를 반영한다고 반영하도록 했는데 다시 확인하고 수정하겠습니다.
위 원 장	글을 쓰다 보면 점 하나를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잘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발언자	발언내용
◆ ◆ ◆ 위 원	<p>그리고 제4조에 위원장님께서도 당연히 ‘KPI’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수조건 안에 보시면 KPI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게 제4조 제1항에 둘째 줄에 ‘KPI를 설정하고’라고만 되어있어서 KPI를 정의를 좀 해주고 넷째 줄에 보면 ‘이하 SLA라고 한다’라고 써놓으셨는데 그것처럼 비슷한 형태로 KPI에 대해서 적어주시고 ‘이하 KPI라 한다’라고 해주시면 좀 더 깔끔하지 않을까 합니다.</p>
■ ■ ■ 위 원	<p>이러한 부분은 통상 우리와 계약상대자가 KPI라고 통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라도 처음 보는 사람도 명확하게 이해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이 문건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잘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p> <p>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계약특수조건 제4조에서 KPI에 대한 정의, 그리고 제13조 법적 분쟁의 해결에서 문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p>
위 원 들	네.
위 원 장	<p>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기타 안건이 없으시면 제1회 계약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p>